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파리지사)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주요 변경사항

EU 집행위원회, 2030년 식품 폐기물 30% 감축 의무화 법안 채택

- EU집행위원회는 7월 5일(수),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 30% 감축 의무화 법안을 채택함. 이번 제안은 EU의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 (Waste Framework Directive)’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을 모아 제안된 것으로, 각 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상점, 식당, 개별 가정 등의 1인당 식품 폐기물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해야 하며, 식품 가공·제조 과정에서의 폐기물도 10% 감축이 의무화됨.
- 이는 2030년까지 각 회원국이 달성할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각 회원국 사정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유럽 내 가장 주요한 식품 폐기물 발생원은 가정 식품 폐기물이며, 수확에서 제품 생산에 이르는 가공 및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그 다음을 잇고 있음.
- 관련 입장차이 : 환경 시민단체 및 녹색당은 EU의 2030년 식품 폐기물 감축 의무 비율은 식품 폐기물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내놓음. 환경단체는 EU가 참여한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2.3’에 제시된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단계 1인당 식품 폐기물과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식품 손실을 50% 감축한다는 목표에 비해 현재의 목표치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 출처: https://food.ec.europa.eu/safety/food-waste/eu-actions-against-food-waste/food-waste-reduction-targets_en

2. 시사점

- EU는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의 대응 방안으로 식품 폐기물 및 식품 낭비 관련된 법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추세이며, 식품 수출 및 통관에 관련해서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식품 관련 정책 및 지침에 어떤 변경사항이 적용될 것인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EU 소속 국가들에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관련 이슈의 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개정사항에 발맞추어 취급 상품을 제조 및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유럽위원회, 농약 디목시스트로빈 승인 갱신 거부 결정

- 2023년 7월 10일자에 발효된 위원회 규정 EU 2023/1436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1107/2009에 따라 활성 물질 디목시스트로빈의 승인 비갱신에 관한 것 및 위원회 개정 시행 규정 EU 540/2011 및 위원회 시행 규정 EU 2015/408을 수정함.
- 활성 물질이자 살균제인 디목시스트로빈(dimoxystrobin)은 곡류 및 채소, 잔디 등의 질병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이자, 생식 독소 및 발암 물질로, 장기적인 사용시 수생생물들에게 매우 유독하며, 어류, 조류와 포유류에 대한 높은 위험이 동반됨. 또한, 지속적인

높은 지하수 오염을 야기함.

2. 변동사항

- EU 당국은 2022년 1월과 6월에 디목시스트로빈과 지하수 오염과 관련된 포유류 독성학, 환경학, 생태독성학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디목시스트로빈이 독성학적으로 지하수 오염과 관련 있다는 결과가 도출됨. 따라서 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과 2023년 1월 25일에 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 상임 위원회에 관련 내용과 보고서를 전달하였음.
- 디목시스트로빈의 출원자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EU 당국은 디목시스트로빈의 환경적 영향과 생태학적 독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규정 EC 1107/2009의 4조에 규정된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 EU 이행 규정 540/2011에 대한 부록A 파트A에서 디목시스트로빈의 128행이 삭제되었음. 또한, EU 시행 규정 2015/408 부록의 디목시스트로빈 항목이 또한 삭제됨. 이 규정은 2023년 7월 3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3R1436>

3. 기타 주의사항 등

- 위 개정안은 2023년 7월 31일부로 시행됨. 따라서 해당 일자부터 EU 내의 디목시스트로빈은 더 이상 승인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디목시스트로빈을 사용하여 수확하거나 제조된 농식품을 EU 내로 수출하는 수출업체들은 적용일로부터 통관 시 수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서 해당 살충제나

식품 첨가제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 - 기준월(7월) 보고된 사례 없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시사점

- 특이사항 없음.